

의안
번호

6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8. 2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6호
- 다. 제출일자 : 2022. 08. 17.
- 라. 회부일자 : 2022. 08. 18.

2. 제안이유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기금변경 사유

-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사업비 잔액정산)

-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2)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 20년도말 조성액(가)	' 21년도 증감액			' 21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922,110	△1,294	54,537	55,831	920,816

-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766,768	1,008,000	241,232

- 2021년 기정예산 766,768천원에서 1,008,000천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679,583천원에서 920,815천원으로 증액 편성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66,768	1,008,000	241,232	
보 조 금	24,000	24,000	-	
예치금회수	679,583	920,815	241,232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
이자수입	14,385	14,385	-	
기타수입	48,800	48,800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66,768	1,008,000		
비용자성사업비	126,820	126,820		
융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예치금	430,772	672,004	241,232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기타지출	9,176	9,176		

4)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 : 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2년말 조성액 (잔액)
1,008,000		135,996		672,004
보 조 금 24,000 예치금회수 920,815 이자수입 14,385 기타수입 48,800	-	비용자성사업비 126,820 융자성사업비 200,000 기타지출 9,176	=	2023년도 이월(예치금)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5. 검토의견

□ 변경안 개요

- 본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따른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1)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2)의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3항3)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임.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발생한 시설 개선자금 융자 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123만원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으로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2억 4,123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재원을 예치금 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종합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5.8%, 2억 4,123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 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